

##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(25년 10월)

- 민화(호작도)에 있는 호랑이와 까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이용해도 되나요? -

2025. 11. 24. / 저작권상담팀 ☎ 1800-5455)



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>)의 '안동시, 안동엄마까투리체' 글꼴로 생성

(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)

### □ 용어 정의

- (월간 워드클라우드)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저작권 관련 단어 100개를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
- (월간 주요 상담사례) 저작권상담 내용 중 주요 사례를 요약 정리

### <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 단어 순위>

순위	저작물 종류별	기타
1	영상	등록
2	영화	이용
3	이미지	침해
4	캐릭터	계약
5	사진	공모전

\*'저작권, 저작물'은 순위에 든 종류를 포괄하는 단어로 순위에서 제외

< 10월 주요 상담사례 >

- (미술) 조선시대 작가 미상의 민화(호작도)를 참고해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. 민화가 ○○미술관 소장품인데, 이러한 경우 소장자에게 저작권이 있는지, 이용 시 허락이 필요한지, 또는 소장처 표기만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.
  - 민화 원본을 소장한 미술관은 그 유체물(원본 실물)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며, 저작권이 소장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저작권법상 소장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거나 소장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.
  - 저작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고(저작권법 제39조), 작자 미상 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저작권을 보호한다(동법 40조).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(Public Domain)이 된다.
  -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거나, 작자 미상인 민화가 공표된지 70년이 지났다면, 소장처와 무관하게 민화 이미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  - 다만, 저작권과 별개로 소유권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, 원본 작품을 직접 촬영하거나 복제하는 등 미술관의 실물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내부 규정이나 허락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.

## < 시스템(챗봇)에 가장 많이 묻는 질의 >

순위	질의
1	저작권 등록 문의
2	저작권법 상담사례
3	등록 절차
4	저작권(이용 일반 및 제한)
5	신규 권리등록
6	등록 일반
7	저작권(일반저작물) 등록 신청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?
8	저작권교육
9	저작권 분쟁조정
10	저작물(보호대상)

\* 질의에 대한 답변은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\* 챗봇: <https://chatbot.gov.kt-aicc.com/client/GCL-01-C-00000221-0001/chat.html>

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(<https://kywa.or.kr>)의 '청소년서체'로 작성

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25년 10월)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